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10(화)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7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5. 5. 29.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3. 검토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4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88,652,338,700	907,445,806,328	759,524,787,697	147,921,018,631
일 반 회 계	854,179,153,590	872,655,866,005	740,177,300,067	132,478,565,938
특 별 회 계	34,473,185,110	34,789,940,323	19,347,487,630	15,442,452,693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20,981,493,340	26,989,299,570	880,535,800	8,731,192,917	13,075,040	-	90,325,421,964
일 반 회 계	20,261,493,340	25,570,176,570	880,535,800	6,978,499,197	13,075,040	-	78,774,785,991
특 별 회 계	720,000,000	1,419,123,000	-	1,752,693,720	-	-	11,550,635,973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7,445,806,328원으로 예산현액 888,652,338,700보다 18,793,467,628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3.6%인 759,524,787,69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921,018,631원임.
- 이 중 명시이월비 20,981,493,340원, 사고이월비 26,989,299,570원, 계속비이월 880,535,8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744,267,957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90,325,421,964원임.

2)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순세계잉여금 ㉓=㉑+㉒	초과세입금 ㉑	집행잔액 ㉒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결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90,325,421,964	18,793,467,628	71,531,954,336	3,283,742,131	68,416,000	3,666,007,390	1,417,012,600	29,743,740,000	33,353,086,215
일반회계	78,774,785,991	18,476,712,415	60,298,073,576	3,235,670,921	67,336,000	3,644,897,390	1,406,075,300	29,666,703,000	22,277,390,965
특별회계	11,550,635,973	316,755,213	11,233,880,760	48,071,210	1,080,000	21,110,000	10,937,300	77,037,000	11,075,645,250

※ 순세계잉여금은 90,325,421,964원으로 세입결산의 초과 세입금 (18,793,467,628원)과 세출결산의 실제 집행잔액(71,531,954,336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의 잉여금처리)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재원으로 편성 가능함.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0,303,578,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일반회계	30,226,541,000	559,838,000	530,251,130	-	29,586,870
특별회계	77,037,000	-	-	-	-

-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0,303,578,000원으로서 전년도 48,431,748,000원보다 18,128,170,000원 감소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 외 7건 559,83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30,251,1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9,586,8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41,506,931,619	864,137,552	9,354,322,108	8,490,184,556	42,371,069,171
남북교류협력기금	205,886,640	△39,557,760	8,889,700	48,447,460	166,328,880
고향사랑기금	-	115,413,680	115,413,680	-	115,413,680
재난관리기금	5,829,497,642	136,071,078	1,337,602,208	1,201,531,130	5,965,568,7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542,966,126	952,368,579	952,368,579	-	21,495,334,705
중소기업육성기금	5,058,508,616	△69,296,188	4,934,542,682	5,003,838,870	4,989,212,428
청년미래기금	2,123,589,038	△5,255,379	106,027,621	111,283,000	2,118,333,659
자활기금	1,100,495,516	△13,395,635	196,604,365	210,000,000	1,087,099,881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	214,594,384	262,702,384	48,108,000	214,594,384
노인복지기금	351,942,060	13,582,890	22,438,890	8,856,000	365,524,950
양성평등기금	429,727,593	△16,151,370	21,207,190	37,358,560	413,576,22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71,434,675	7,441,810	30,569,210	23,127,400	478,876,48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47,707,073	39,997,840	56,061,066	16,063,226	387,704,913
옥외광고발전기금	1,000,736,120	44,726,864	123,879,204	79,152,340	1,045,462,984
도로굴착복구기금	3,177,066,730	△494,418,037	1,091,948,553	1,586,366,590	2,682,648,693
식품진흥기금	867,373,790	△21,985,204	94,066,776	116,051,980	845,388,586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41,506,931,619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9,354,322,108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8,490,184,556원이고
차인잔액은 864,137,552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 사무국	4,356,373	4,100,804	255,569	2,037	16,000	237,532	

○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43억 5,63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1%인 41억 80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556만 9천원(5.9%)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4,356,373	4,100,804	94.1	255,569	5.9	
선진의회상정립	1,395,931	1,336,293	95.7	59,638	4.3	
의정 활동 지원	97,070	89,186	91.9	7,884	8.1	
열린 의회 운영	53,711	50,470	94.0	3,241	6.0	
의정 홍보 활동 전개	112,833	112,515	99.7	318	0.3	
구의회청사관리	214,416	209,276	97.6	5,140	2.4	
의회비지원	875,395	837,775	95.7	37,620	4.3	
의회장비보강	13,050	12,887	98.8	163	1.2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5,640	4,340	77.0	1,300	23.0	
인력 및 조직운영	23,816	19,844	83.3	3,972	16.7	
행정운영경비	2,960,442	2,764,511	93.4	195,931	6.6	
인력 운영비	2,851,250	2,657,990	93.2	193,260	6.8	
기본경비	109,192	106,521	97.6	2,671	2.4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억 5,556만 9천 원(불용율 5.9%)을 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 집행잔액은 5,963만 8천 원(불용율 4.3%)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1억 9,593만 1천 원(불용율 6.6%)임.

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비 고
계	255,569	2,037	16,000	237,532	
의 정 활 동 지 원	7,884	1,746	4,000	2,138	
열 린 의 회 운 영	3,241	-	-	3,241	
의 정 홍 보 활 동 전 개	318	234	-	84	
구의회청사관리	5,140	-	-	5,140	
의 회 비 지 원	37,620	-	12,000	25,620	
의 회 장 비 보 강	163	-	-	163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1,300	-	-	1,300	
인력 및 조직운영	3,972	57	-	3,915	
인 력 운 영 비	193,260	-	-	193,260	
기 본 경 비	2,671	-	-	2,671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억 5,556만 9천 원(불용율 5.9%)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예산절감액은 203만 7천 원으로 0.8%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600만원으로 6.3%임.
- 지출잔액은 2억 3,753만 2천 원으로 92.9%임.

○ 집행잔액 총액의 0.8%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절감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746천원
→ 유보액 5% 절감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34천원
→ 유보액 5% 절감
- ‘인력 및 조직운영’ 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7천원
→ 유보액 5% 절감

○ 집행잔액 총액에서 6.3%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 4,000천원
→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직원 무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 12,000천원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자매결연 미발생

○ 집행잔액 총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국내여비 등 : 2,138천원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행사운영비 등 : 3,241천원
→ 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바캉스 행사 축소 운영(2일→1일)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공공운영비 등 : 84천원
-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 중 시설비 등 : 5,140천원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 25,620천원
- ‘의회장비보강’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 163천원
-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사업 중 포상금 등 : 1,300천원
- ‘인력 및 조직운영’ 사업 중 특정업무경비 등 : 3,915천원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등 : 193,260천원
→ 상·하반기 인사변동에 따른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잔액발생
-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 등 : 2,671천원

※ 결산서 487p, 심사보조자료 5~9p 참고

다. 검토의견

1) 연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비율(%)	
2024	4,356,373	4,100,804	255,569	5.9	
2023	4,047,574	3,630,541	417,033	10.3	
2022	3,557,487	2,819,116	738,371	20.8	
2021	3,349,884	2,993,932	355,952	10.6	
2020	3,138,218	2,929,747	208,470	6.6	

2)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3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열린의회운영	행사운영비	9,100	6,315	2,785	31
의회비지원	의원국내여비	16,800	10,075	6,725	40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0,600	4,752	5,848	55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0	1,050	2,950	74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포상금	4,300	3,000	1,300	30
인력 및 조직운영	행사운영비	2,000	1,037	963	48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300	116	184	61

○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억 5,556만 9천 원 으로, 2023회계연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4% 감소하였으며,

- 이는 의정홍보활동전개 및 구의회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세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히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의회 회의실 환경개선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음.
- 향후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며,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정밀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